

2026 부산디자인의 날 유공 포상계획 공고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산업디자인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기업을 포상하여, 디자인의 중요성을 확산하고 혁신의지를 고취하고자 합니다.

2026.10.26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진흥원 원장

1. 포상부문 및 포상대상

부 문		포상 종류	포상 규모	포상대상(자격)
개인	디자인 공로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	1	- 지역 디자인산업 역량강화 및 국민의 디자인에 대한 인식 확산에 크게 기여한 개인 - 동남권 디자인산업 육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포상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한 자
기업	동남권 우수 디자인 기업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	1	- 디자인경영전략 및 디자인경영혁신을 유도하여 디자인산업 및 지역 경쟁력 강화에 크게 공헌한 디자인 전문기업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디자인전문회사 - 포상추천일 기준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업력 3년 이상인 기업

2. 추천자 자격

- 디자인 공로 : 포상후보자에 대해 소속 협·단체, 기업, 기관 등의 대표가 추천서류 제출
- 동남권 우수 디자인 기업 : 포상후보자에 대해 소속 협·단체 대표가 추천서류 제출

※ 본 포상은 추천제에 따라 운영되며, 후보자 본인(자신)의 직접 신청 및 자가추천은 불가

3. 제출서류

- 공적조서 1부(소정양식)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소정양식) ※ 기업의 경우, 대표가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소정양식) ※ 기업의 경우, 대표가 작성
- 불공정행위 및 임금체불 조회 명단 1부(소정양식, 기업부문)
- 소속기관·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적 내용 관련 증빙자료 각 1부(해당내용이 있을 시)
 - 산업재산권, 논문게재실적 등 증빙자료, 수상실적(표창장 등) 사본 또는 수상경력증명서, 매출액 및 수출액 증빙자료, 납품실적 증빙자료 등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10.26. ~ 2026.11.6. 17:00 까지
-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접수
- 접수처: (4805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3층 경영지원팀
- ※ 방문 및 우편 접수 모두 신청기한 내 도착분만 유효
- ※ 우편 접수는 담당자에게 전화로 접수 확인 필수 (☎ 051-790-1023)

5. 진행일정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로 부문은 필요시 사실관계 확인 등의 심사 진행

※ 심사 결과는 신청서 상의 연락처로 개별 통보되며, 최종 수상자 발표는 국가 포상을 위한 공적심사 절차에 따라 12월에 통보 예정

6. 선정방법 : 서류심사

○ 심사지표 ※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표는 변경될 수 있음

- 디자인 공로 부문

지표명		지표의 정의	배점
공통 지표 (40)	국가발전 기여도	심사 대상자(개인, 집단)의 공적이 국가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	10
	국민생활 향상도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국민생활 (삶의 질)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10
	고 객 만족도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10
	창조적 기여도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10
특성 지표 (60)	공적기간	디자인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운영한 경력의 연수 (예: 디자인 관련 분야 재직기간, 기업경영 연수 등)	10
	업적도	디자인 관련 분야의 실적 정도 및 업적 수준 (예: 디자인 개발·홍보 등 산업 육성 및 연구·저술 등 진흥 활동, 국제대회 입상, 사회공헌 등)	20
	기여도	디자인 분야 발전에 기여한 정도 (예: 디자인 정책 수립·제도 개선, 유관기관과 협력, 특허, 관련 행사 참여 등)	20
	인지도 · 평판도	공적에 대한 대중의 인지 정도, 관련 종사자에 의한 평판 및 지지도	10
합 계			100

- 동남권 우수 디자인기업 부문

지표명		지표의 정의	배점
공통 지표 (40)	국가발전 기여도	심사 대상자(개인, 집단)의 공적이 국가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	10
	국민생활 향상도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국민생활 (삶의 질)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10
	고 객 만족도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10
	창조적 기여도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10
특성 지표 (60)	공적기간	디자인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운영한 경력의 연수 (예: 디자인 관련 분야 재직기간, 기업경영 연수 등)	10
	업적도	디자인 관련 분야의 실적 정도 및 업적 수준 (예: 디자인 개발·실적(프로젝트 추진 및 투자액 등), 시장 경쟁력 가치, 성장성, 국제대회 입상, 사회공헌 등)	20
	기여도	디자인 분야 발전에 기여한 정도 (예: 디자인 활용, 보호, 관리체계, 특허, 관련 행사 참여 등)	20
	인지도 · 평판도	공적에 대한 대중의 인지 정도, 기업(단체)과 경영자의 디자인경영 비전·전략 확립 정도와 관련 종사자에 의한 평판 및 지지도	10
합 계			100

7. 포상제한 및 추천제한 사항

○ 재포상 금지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 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모범공무원의 경우도 표창과 같이 3년 적용, 단체표창은 제외)

○ 이중포상 금지 ▶ 수여일로부터 적용

-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음

○ 국민표창 추천제한

1) 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 창안상,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여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 가능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 가능

4)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5)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채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채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채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채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채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채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채불사업주

* 추천일 이전 채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되거나 채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6)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7) 산업통상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8)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정부포상 업무지침 2. 일반국민 포상 참고)

○ 단체표창 추천제한

1)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2)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민간단체만 적용)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여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 가능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민간단체에만 적용)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 가능

- 5)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 인 상장회사
- 6)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 7)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임금채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채불사업주(단체)
 -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채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채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채불사업주
 -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채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채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채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채불사업주

* 추천일 이전 채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되거나 채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8) 산업통상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9) 기타 사회적 물의

※ 산재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채불사업주 조회기관

- **산재명단공표**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044-202-8813)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PDF)
- **불공정행위**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044-200-4131)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 심결/법령 → 범위반사실조회
- **임금채불사업주**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8)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채불사업주 명단공개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 최근 1년 이내 감사보고서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부분 확인

○ 장관표창 취소

- 1) 추천제한자 등 표창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거나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 2) 공적조서의 공적사항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3)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산업통상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을 따름

8. 문의처

가. 전화: 051-790-1023

나. 전자우편: minjun@dcb.or.kr

※ 주말 및 공휴일,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문의 답변을 진행하지 않음

붙임 1. 추천서식 1부.

2. 불공정행위 및 임금체불 조회 명단(양식) 1부. 끝.